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파주형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안내

파 주 시

목 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1
1. 지급 신청서 ····· 1
2. 신청 위임장 ····· 5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6
4. 부정수급 확약서 ····· 7
5. 이의신청서 ····· 8
6. 제출서류 ····· 9
7. 제출서류 발급방법 ····· 11

Ⅰ. 추진목적 ····· 12

Ⅱ. 정책개요 ····· 12
1. 정책내용 ····· 12
2. 지원대상 ····· 12
3. 제외대상 ····· 13

Ⅲ. 신청방법 ····· 14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14

Ⅳ. 심사 및 지급일정 ····· 15
1. 심사 ····· 15
2 지급 ····· 15
3. 지급중지 및 환수 ····· 15

【참고 1】 쉽게 알아보는 Q&A ····· 16

【참고 2】 지원 제외업종 ····· 22

문의전화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1-940-4537) / 대중교통과(☎ 031-940-5291)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성별)	(남 / 여)
	업 종		사업개시일	
	사 업 장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상시근로자수	명	2020년도 연 매출액	원
신청인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금 계 좌	은행명 : 예금주 계좌번호		
피해현황	매출피해액	2019년 월 평균매출액	2020년 월 평균매출액	
		원	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등본 1부 2.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3.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4.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인하여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5.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6. 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성별)	(남 / 여)
③ 주 소:		
④ 연락처: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 가능 서류(재직증명서 등)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4. 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별지 제4호서식] 개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개인택시기사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대상자 현황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성별)	(남 / 여)
	사업자등록번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날	
	자동차등록번호			
	전화(핸드폰)번호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 타 사업 신청여부	□ 미신청 □ 특고직 등	□ 소상공인형 □ 화물자동차형	
	본인은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개인택시조합**에서 일괄로 취합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청인	신청인			
	주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택시기사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공 통	1. 신분증(사본)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허가증(사본)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위임 시	1. 위임장 2.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별지 제5호서식] 법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법인택시기사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대상자 현황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성별)	(남 / 여)
	법인회사 관련	(법인명)		(법인대표자명)
		(법인주소)		
		(대상자 입사 연・월・일)		
	전화(핸드폰)번호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 타 사업 신청여부	□ 미신청 □ 특고직 등	□ 소상공인형 □ 화물자동차형	
	본인은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조합**에서 일괄로 취합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청인	신청자			
	주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택시기사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자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공 통	1. 신분증(사본) 2.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위임 시	1. 위임장 2.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자 (본 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휴대전화			
	주소			
피위임자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상기 피 위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파주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파주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5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파주시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성 명	이 선 주
전 화	031-940-4537
이메일	joolee79@korea.kr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파주시가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지원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2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3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 (서명 / 인)

파주시장 귀하

이의 신청서

※ 지급 불가 대상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신청인	성 명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상기 본인은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불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사유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 첨부서류 :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파주시장 귀하

[제출서류]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매출액 증빙자료에서 휴업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⑤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전부포함 발급)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 매출액 10억원 이하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 자료) - 사업장현황신고서(2019년 자료)
⑦ 2020년 매출액 증빙서류 증빙자료 ('20년 매출액 3억이하 확인자료) ('19년 매출액 3억 초과 ~ 5억이하 매출액 5% 감소자료) ('19년 매출액 5억 초과 ~ 10억이하 매출액 10% 감소자료)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화면 캡쳐, 핸드폰 사진 출력본 등 가능)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상대방 서명 필수) -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⑨ 법인·개인택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 -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⑩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 매출액 감소여부 계산방법

2019년, 20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020년 창업자**의 매출액을 비교

2019년, 2020년 월평균 매출액 = 2019년 1월~12월 매출액 합계 ÷ 12개월
2020년 1월~12월 매출액 합계 ÷ 12개월

2020년 창업자 연 매출액 = (창업 월 ~ 2020년 12월까지 매출액 합계) ÷ 해당 개월수 × 12개월

(예) 2020년 4월 창업자
2020년 4월 ~ 12월 9개월간 매출액 합계 9천만원 일 경우
월평균 매출액 1,000만원 × 12개월 = 1억 2천만원으로 3억미만 소상공인에 해당

[제출서류 발급방법]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식 수령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무인민원발급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무인민원발급기 - 세무서 방문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신청(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https://edi.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온라인 서류발급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텍스 ☎ 126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02-3215-2674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정부24 ☎ 110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파주형 긴급생활안정 지원 안내

Ⅰ 추진목적

○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및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Ⅱ 정책개요

1 정책내용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 지원금액 : 소상공인 사업체당 1백만원 정액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50만원 정액 지급

2 지원대상

①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②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을 하고 재직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한 자(특고)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

③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파주시 사업장에 재직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④ 2019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20년 창업자, 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19년 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인 소상공인 중 매출액 5%이상 감소자
- '19년 매출액 5억초과~ 10억이하인 소상공인 중 매출액 10%이상 감소자

3 제외대상

①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 대상 업체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운영업(콜라텍, 댄스홀)은 지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19년 및 20년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

⑥ 법인사업자

⑦ 주민등록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통신판매사업자

Ⅲ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1월 5일(화) ~ 2월 10일(수)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다만, **1월 5일**(화)**부터 1월 11일**(월)**까지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월 12일**(화)**부터 2월 10일**(수)**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접수일자	1. 05 (화)	1. 06 (수)	1. 07 (목)	1. 08 (금)	1. 11 (월)	1.09~ 1.10 (토/일)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5, 0 (예 : 1960년생, 1965년생)	1, 6	2, 7	3, 8	4, 9	휴무

- **(온라인신청)**

  ●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 제출서류 스캔본을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 업로드 (받는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입력)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 **(택시종사자 지원금 신청)**

  ●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940-5291)에 서류 제출

Ⅳ 심사 및 지급일정

1 심 사

○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여부 심사하여 지원 결정 및 지급

○ 신청인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2 지 급

○ 현금지급

3 지급중지 및 환수

□ 근거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급일 당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책 내용 문의

일자리경제과 긴급생활안정TF팀(☎ 031-940-4537)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전화번호	읍면동	전화번호
운정1동	820-7704	교하동	820-7603
운정2동	820-7744	교하출장민원실	820-8762
운정3동	820-7654	법원읍	940-8054
금촌1동	940-5926	파주읍	940-8035
금촌2동	940-8229	광탄면	940-8154
금촌3동	940-8750	탄현면	940-8095
조리읍	940-8134	월롱면	940-8076
문산읍	940-8013	적성면	940-8555
장단출장소	940-8252	파평면	940-8164

참고 1 쉽게 알아보는 Q&A

Q1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코로나 19로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차료 지급, 인건비 지급 등 당면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Q2 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나요?

소상공인 현금 100만원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1회 100만원만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개인택시종사자 현금 50만원 1회 지급됩니다.

Q3 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디로 가서 하나요?

○ 신청기간 : 2021년 1월 5일부터 ~ 2월 10일
○ 신청방법 ①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②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모두 스캔파일로 첨부 필요)

Q4 지원금 신청은 선착순 마감인가요?

신청은 선착순 마감이 아닙니다.

Q5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Q6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고 나서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약 14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Q7 특고이며, 소상공인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중복 지급 불가합니다.

특고이며 소상공인인 경우는 지급액인 많은 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8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체크리스트1.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입니다.】

	항 목	예	아니오
1	신청월 1월 기준 3개월 이전(9월 30일)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있다.		
3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이외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근로가 수가 5명 미만이다.		
4	2020년 과세표준 3억이하이다.		
	2019년 과세표준 3억 초과 ~ 5억이하이며,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5%이상 감소했다.		
	2019년 과세표준 5억 초과 ~ 10억이하이며,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0%이상 감소했다.		
5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단,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운영업(콜라텍, 댄스홀)) 국가 및 지자체에서 행정명령대상이다.		

【체크리스트2. 아래 항목에는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지원대상입니다.】

	항 목	예	아니오
1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이다. * 단, 행정지도를 받아 휴업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19년 및 '20년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2	신청월 1월 기준 3개월 이후(10월 1일부터)에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있다.		
4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영리 사업자이다.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이다.		
6	법인사업자이다.		
7	도박·사행성 업종 등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 더 알아보기

① 사업장 주소와 집주소가 모두 파주시인 사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사업장 주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집주소가 모두 파주시인 사람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개업했거나 파주시로 이전한 업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입니다.

예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 1월 신청 기준 3개월 이전은 10월 이전이므로 9월 30일까지 해당
- 2월 신청 기준 3개월 이전은 11월 이전이므로 10월 31일까지 해당

③ 상시근로자 수가 무엇인가요?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에 관계없이 직원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신고했다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원을 고용한 적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고객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찾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관할지역(고양지사)을 입력하여 확인

④ 현재 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직원을 모두 내보냈는데 그러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인가요?

⇨ 현재는 직원이 아무도 없더라도 최근에 직원이 있었다면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③참고)

⑤ 2019년 연간 매출액 총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서류에 나타난 수입금액 총액이 2019년 총 매출액입니다.

⑥ 2020년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통장거래내역서(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상대방 서명 필수)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⑦ 2019년,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19년, 2020년도 각각 매출액 총액을 12로 나누면 월평균 매출액이며, 2019년, 2020년에 새로 개업한 업체인 경우는 각각 영업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월평균 매출액입니다.

(예) 2019년 1년간 총 매출액이 1억 2천 만원인 경우, 월평균 매출액은 일천만원

⑧ 현재 가게 운영이 어려워 잠시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 중이면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단순히 일시적으로 닫고 있는 가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19년 및 '20년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⑧ 건물소유자로서 자기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네, 지원대상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전 지원금은 자가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⑨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아래 표의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한다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을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업종번호를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고객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찾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관할지역(고양지사)를 입력하여 확인

Q9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지원조건 및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한 후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한 파일로 스캔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신청방법]

① 문서24 사이트에 접속해 문서작성 메뉴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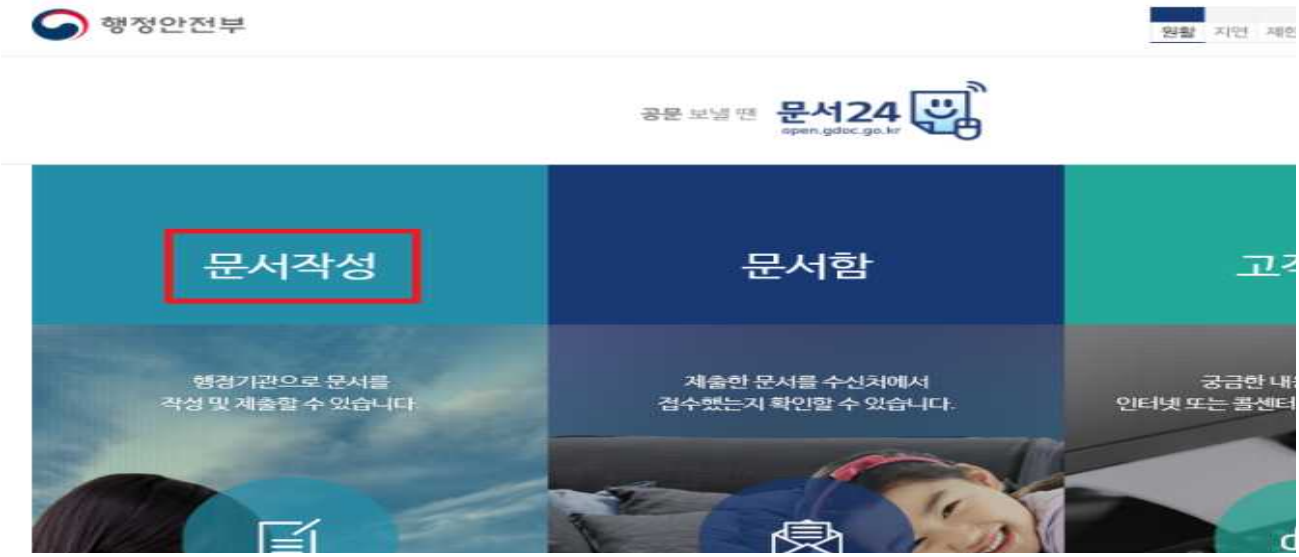

② 개인사용자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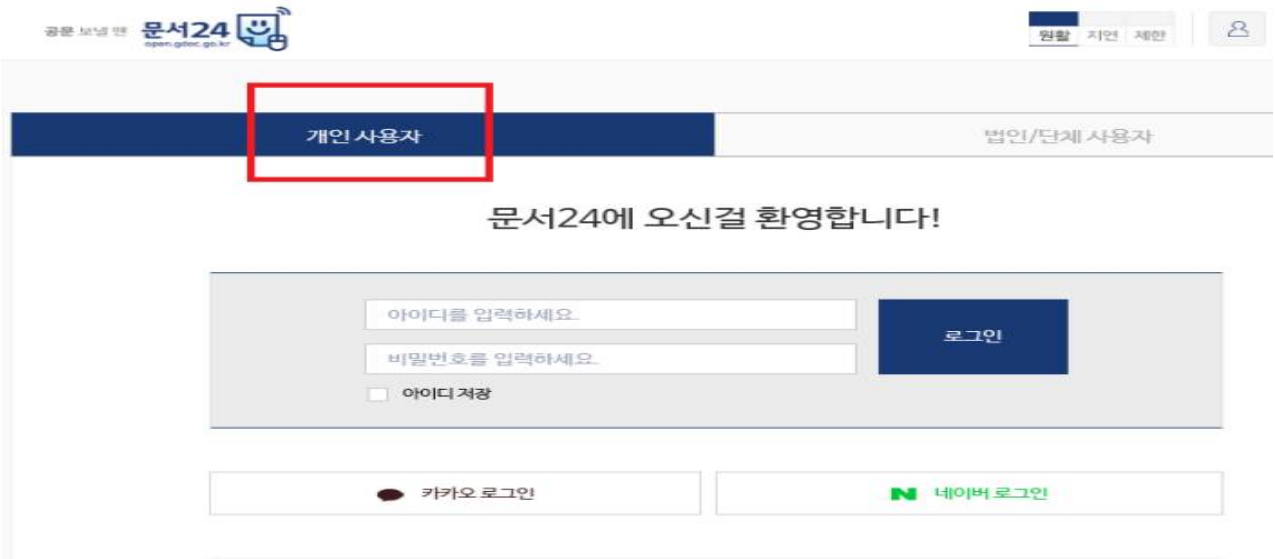

③ 공문서 제출전 확인사항에 모두 동의한 후 문서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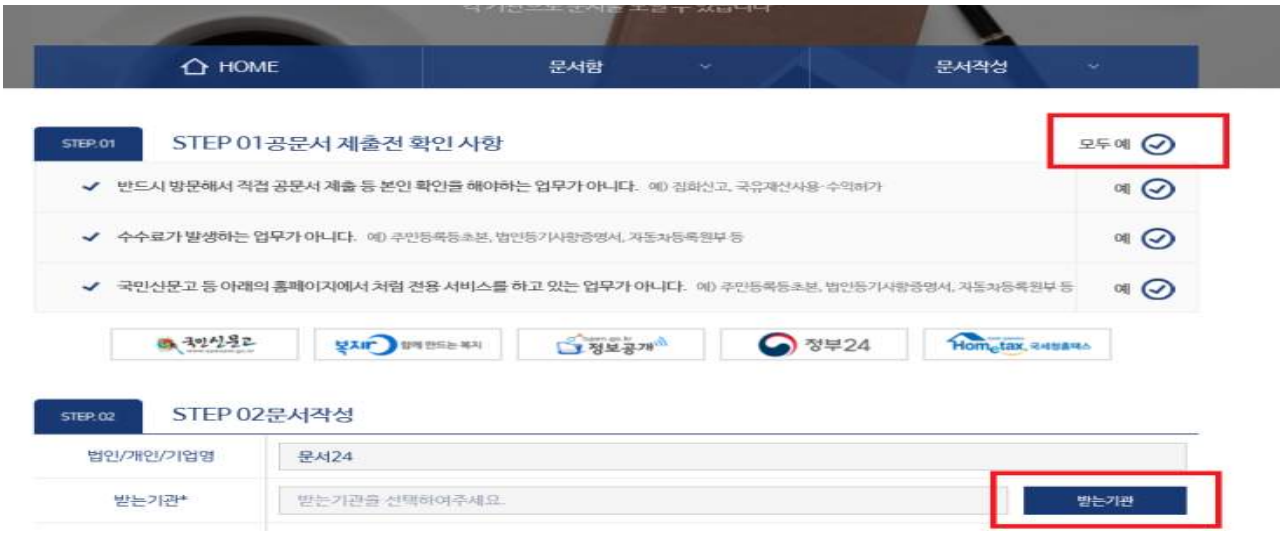

④ 받는기관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이름을 검색한 후 선택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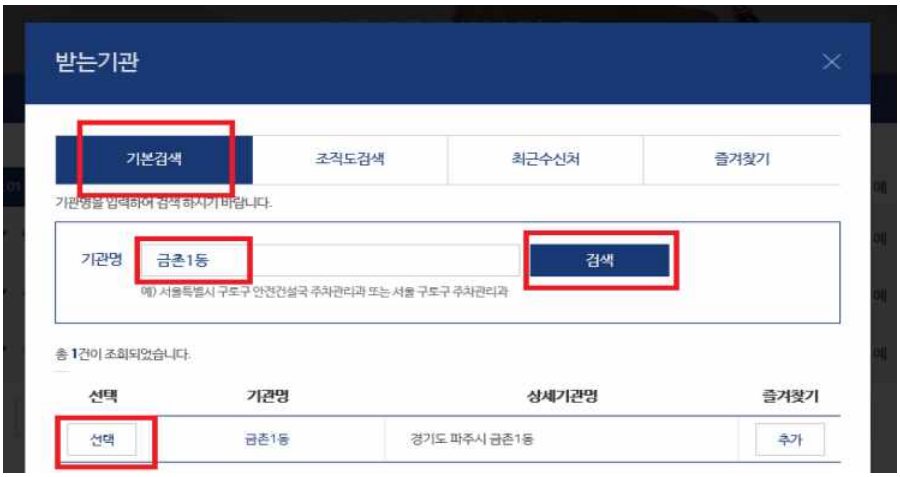

(읍면동 이름을 정확히 써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 문산읍, 금촌1동, 운정1동 등 행정동 명칭으로 검색
- 당하동, 목동동 등 법정동·리 명칭 검색 불가

⑤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모든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첨부파일에 업로드한 후 전송요청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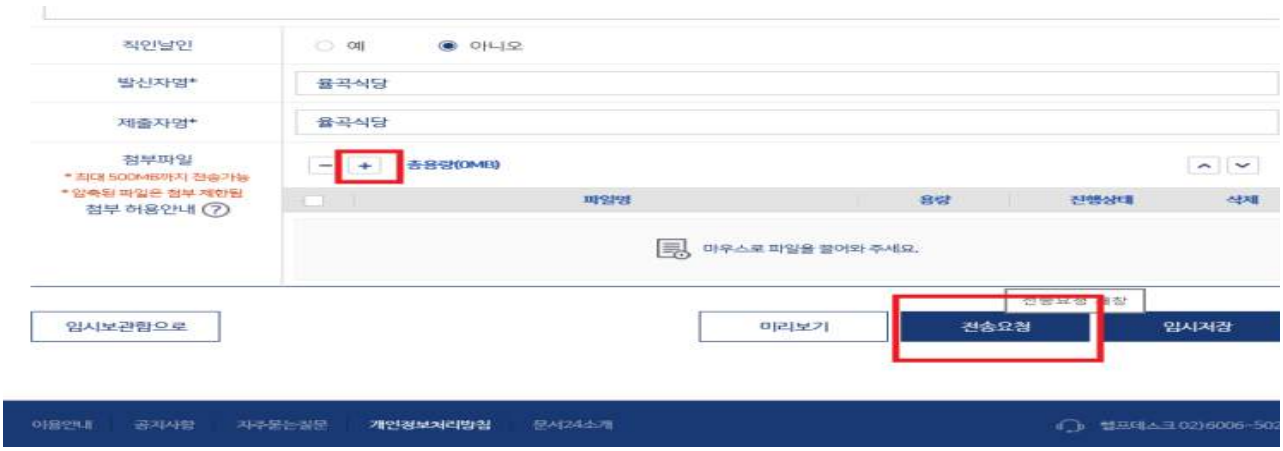

참고 2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업종 및 분류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표준산업분류	업 종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